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8
----------	----

2022년 12월 21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8. 29. 최호정 의원 외 11명

나. 회부일자 : 2022. 9. 2.

다. 상정일자 : 제315회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

- 2022년 12월 21일 상정·의결(수정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회의규칙에 존재하는 부정확·오류사항 등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 표기사항 중 서울특별시교육감 누락사항 보완(안 제1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54조제3항)
- 위원회 제출 의안 철회 관련 규정 신설(안 제25조제3항)
-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4시간 전까지 그 발언의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이나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의록에 적도록 함(안 제48조제3항 신설)
- 연석회의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58조)
- 문맥에 맞게 자구수정 및 기타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18조 등)

3.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 예산 조치 : 해당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병수)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안은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표기 중 누락된 서울특별시교육감 등의 오류 사항과 부정확한 표현을 정비하여 회의규칙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회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되었음.

2 서울특별시교육감 누락 사항 보완(안 제1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54조제3항)

- 현행 회의규칙에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서울특별시시장만 표기하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누락한 조항들이 있음(교육감 누락 조항 4개, 시장·교육감 동시 표기 조항 3개).
- 이와 관련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지방자치법」의 단체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도록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시장만 표기된 4개 조항에 대해 교육감을 병기하는 것은 법령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회의규칙 조항과 실제 회의 운영을 일치시키는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3 위원회 제출 의안 철회 관련 규정 신설(안 제25조제3항)

- 현행 회의규칙 제25조는 의안·동의(動議)의 철회에 관한 내용으로, 의원이 발의한 의안과 동의의 철회(제1항)와 시장 등이 제출한 의안의 철회(제2항)만 다루고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의 철회에 관한 규정은 빠져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회의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바람직한 개정으로 이해됨.

- 다만, 신설 조문은 현행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의 제출자가 되는 위원장이 그 의안을 철회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필요하다는 내용과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이 본회의 의제가 된 경우 그 의안의 철회 시에는 본회의 동의를 필요한 사항이 빠져 있는 등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은 수정이 필요함.

<표-1> 제25조제3항의 수정 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25조(의안·동의를 철회) ①② (생략)</p> <p>③ 제5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을 철회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의안이 본회의 의제가 되기 전에 위원회에서 회송을 요청하고, 그 의안에 관한 번안동의를 해당 위원회에서 발의된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한 의안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p>	<p>제25조(의안·동의를 철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5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을 위원장이 철회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안이 본회의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제안한 의안이 본회의 의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 의안에 관한 번안동의를 해당 위원회에서 발의되어 해당 위원장이 이미 제출한 의안의 회송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한 의안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p>

4 5분 자유발언의 총 시간 제한과 신청 마감 시한(안 제37조)

-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 한정된 시간 내에 의견을 발표하는, 의정활동의 제도적 수단 가운데 하나임.
- 현행 회의규칙은 5분 자유발언의 총 시간 제한과 관련해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하여 본회의 개의 시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제한하였음.

- 최근 3년간 본회의 개의일 수 대비 5분 자유발언의 총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22년 제312회 임시회에서 한 차례 있었고, 다른 시도 의회의 관련 규정을 보면 12곳이 1시간(12명) 이내로 제한한 반면 5곳은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표-2>, <표-3> 참조).

<표-2> 최근 3년간 회기별 5분 자유발언 의원 수

'20년 회기	291회	292회	293회	294회	295회	296회	297회	298회	
본회의 개의일 수	2	1	2	1	5	1	1	5	
5분 자유발언 의원수	2		3		4		5	10	
'21년 회기	299회	300회	301회	302회	303회	304회			
본회의 개의일 수	3	2	5	4	5	1			
5분 자유발언 의원수	6		10	17	15				
'22년 회기	305회	306회	307회	308회	309회	310회	311회	312회	313회
본회의 개의일 수	2	3	1	2	1	1	2	1	1
5분 자유발언 의원수	6	4		2			5	13	10

<표-3> 17개 광역의회의 5분 자유발언 총 시간 제한과 신청 마감 기한 규정

광역의회	총 시간 제한	신청 마감 기한
부산	X (특별한 경우,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 제한)	개의 2일 전
대구	1시간	본회의 개의 전일
인천	6명	본회의 개의 전일
광주	X	본회의 개의 전일 18시
대전	11명	본회의 개의 전일
울산	60분	본회의 개의 전일
세종	5명	본회의 개시일 전일
경기	30분	본회의 개의 전일
강원	5명 (초과시,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허용)	본회의 개의 전 의장이 정하는 날
충북	1시간	본회의 개의 전일
충남	X	본회의 시작일 전일
전북	X	본회의 개의 전일
전남	1시간	본회의 개의 2시간 전
경북	X	본회의 개의 전일
경남	8명	본회의 개의 2일 전
제주	30분	본회의 개의 4시간 전

- 실제 본회의 운영 과정에서 5분 자유발언의 총 시간이 과다하여 의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가 없었고 개정안에 명시된 1시간을 초과한 사례도 한 차례밖에 없었기에(1명 5분 초과), 과거 사례에 비춰 이 시간 제한 규정이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는 실효적 의미를 갖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게다가 현행 회의규칙상으로도 5분 자유발언은 의장 허가 사항이기에 의장의 판단에 따라 제한할 수 있음.
- 또한 5분 자유발언의 총 시간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한하는 규정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발언 신청자 수 과다의 문제를 기술적으로 쉽게 해소하는 편익을 갖지만, 그로 인해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필요 이상으로 의원의 자유롭고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는 문제를 안고 있음.
- 따라서 5분 자유발언 총 시간에 대한 구체적 제한은, 그 제한 시간의 실효적 가치, 기술적 편의, 의정활동의 자유 보장이라는 기준을 모두 고려해 신중한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개정안은 5분 자유발언의 신청 마감 시한을 현행 본회의 개의 1시간 전에서 4시간 전으로 변경하였음. 마감 시한과 관련하여 다른 광역의회 사례를 보면, 대다수가 본회의 개의 전일을 시한으로 정해 놓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회보다 짧은 의회는 없음(<표-3> 참조). 타 시도의회 사례와 함께 본회의가 통상 14시에 개의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본회의 개의 전 4시간의 여유를 두는 것은 5분 자유발언을 포함한 본회의 의사진행의 원활한 준비에 도움이 되는 타당한 개정 사항으로 판단됨.

5 작성된 회의록의 수정 불가(안 제48조제3항)

- 개정안은 제48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에서 제3항을 신설하여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이나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의록에 적는다.”고 규정하였음.

- 현행 회의규칙 제48조에 발언자의 자구 정정 요구에 대한 절차(제1항)와 정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제2항)가 있음을 고려할 때, 제3항의 신설은 한편으로 그런 절차가 보장된 조건에서 작성된 회의록 내용의 수정 불가를 밝힘으로써 회의에서 행한 의원 발언의 권위를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 자구 정정이나 취소 발언 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함으로써 의원의 발언상 실수나 오류를 인정할 기회를 보장하는 효용을 갖는 것으로 판단됨.¹⁾

6 연석회의 관련 세부 사항(안 제58조)

- 연석회의는 특정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해당 안건이 다른 위원회와 관련되어 그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2개 이상의 위원회가 한 회의장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임.
- 현행 회의규칙 제58조는 이러한 연석회의 정의에 따라 제1항에서 연석회의 개최와 의견 교환을 보장하면서 표결은 금지하며, 제2항에서 연석회의 요구 절차를 명시하고, 제3항에서 연석회의를 안건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들 조항 중 제58조제3항을 개정하여 연석회의의 회의 주재자 및 그 직무대리자를 규정하고, 제4항, 제5항, 제6항을 신설하여 각각 의사정족수, 회의차수, 토론·표결 불가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개정 사항은 현행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서 연석회의를 안건의 소관 위원회 회의로 한다는 규정을 전제로 하여, 「서울특별시

1) 이와 같은 회의록 수정 불가 규정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국회법」에도 명시되어 있음.

의회 기본 조례」와 회의규칙의 관련 조항을 따를 경우 연석회의 운영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7 문맥에 맞는 자구 수정 및 기타 미비점 보완(안 제18조 등)

- 개정안은 현행 회의규칙 가운데 “개의시”를 “개의 시각”으로(제11조), “기산”과 같이 어려운 표현을 “계산”으로 바꾸고(제13조제2항),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는 등 문맥에 맞는 정확한 자구 수정과 기타 미비점을 대폭 보완하였음. 다만 일부 개정 사항은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조항의 취지와 맞춤법에 맞는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첫째, 개정안은 의안을 내는 주체에 따른 표현 용어과 관련해 위원회의 경우 기존의 “제안”을 “제출”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는데(제18조제1항, 제22조, 제53조), 이는 「지방자치법」 제76조제2항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를 준용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한 모든 지방의회는 국회법을 준용하여 의안을 내는 주체에 따라 의원은 ‘발의’, 단체장은 ‘제출’, 위원회는 ‘제안’, 의장은 ‘제의’라는 표현을 사용해왔기에 위원회가 의안을 내는 경우를 ‘제안’에서 ‘제출’로 변경할 경우 용어 표현과 이해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²⁾
- 둘째, 현행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서는 의안의 상임위원회 회부와 관련해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하는 규정이 빠져있어 아래와 같은 수정이 필요함.

2) 국회법상의 해당 용어 설명에 대해서는 “발의·제출·제안·제의, 요구·요청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국회보』 2017.08) 참조. 이를 준용한 용어 설명은 『서울특별시의회 운영 절차와 실무』 p. 195 참조.

<표-4> 제19조제1항의 수정 의견

원 안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19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u>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의원</u> <u>에게 전자문서로 전송하고</u> <u>인쇄하여 배부하고, 본회의</u> <u>에 보고하며 (이하 생략)</u>	제19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 <u>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u> <u>인쇄하거나 전자문서로 의</u> <u>원에게 알리고 본회의에</u> <u>보고하며, (이하 생략)</u>	제19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 제출되었을 때에는 <u>이를 의</u> <u>원에게 전자문서로 전송하</u> <u>거나 인쇄배부하고 본회의</u> <u>에 보고하며, (이하 생략)</u>

- 셋째, 개정안은 제36조(발언시간의 제한)에서 두 개 항을 신설하여 발언 의원의 수와 순서를 정하는 절차를 규정하였는데(제4항: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 발언의 경우, 제5항: 교섭단체 속하지 않은 의원 발언의 경우), 이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항들을 신설할 경우 제36조의 제목은 “발언시간의 제한”에서 “발언 원칙”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개정안에는 일부 부정확한 표현과 띄어쓰기 및 문장부호가 누락된 경우가 있어 조항의 취지와 한글 맞춤법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8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현행 회의규칙에 있는 오류 사항과 부정확한 표현을 대폭 정비하여 회의규칙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는 동시에 회의규칙을 쉽게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회의 진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5분 자유발언의 총 시간 제한 규정과 위원회가 의안을 내는 경우를 “제출”이라는 용어로 통일한 데 대해서는 회의의 목적과 운영,

준비를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며, 개정안에서도 확인되는 일부 오류 사항과 부정확한 표현은 수정할 필요가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수정 가결

(재적의원 13명, 출석위원 12명, 찬성 12명)

8. 소수 의견의 요지 : 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88 관련
----------	----------

제안년월일 : 2022년 12월 21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 위원회 제출 의안의 철회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연석회의 운영과 관련해 불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을 삭제하며, 그 밖의 일부 오류 사항과 부정확한 표현을 조항의 취지와 문맥에 맞게 수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대한 분명하고 쉬운 이해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수정의 주요내용

- 주민조례청구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8조의2).
-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의 철회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5조제3항).
- 연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을 삭제함(안 제58조).
- 그 밖의 일부 오류 사항과 부정확한 표현을 조항의 취지와 문맥에 맞게 수정함(안 제19조제1항 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 예산조치 : 원안과 같음.
- 기타사항 : 수정안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8조의 제목 “(의안의 발의·제출)”을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안처리시스템(이하 “의안시스템”이라한다), 전자문서 또는”을 “전자문서 또는”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심의를 거친 후 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안 제19조제1항 본문 중 “인쇄하거나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알리고”를 “의원에게 전자문서로 전송하거나 인쇄·배부하고”로 한다.

안 제19조의2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제2항의 단서 중 “생략”을 “의장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생략”으로 한다.

안 제25조제3항 본문 중 “철회”를 “위원장이 철회”로, “언어야”를 “언어야 하며, 그 의안이 본회의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언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 의안이”를 “위원장이 제안한 의안이”로, “되기 전에 위원회에서 회송을 요청하고,”를 “되지 아니 하고”로, “발의된”을 “발의되어 해당 위원장이 이미 제출한 의안의 회송을 요청할”로 한다.

안 제26조제1항 중 “갖추어 의안시스템 또는”을 “갖추어 전자문서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갖추어 의안시스템 또는”을 “갖추어 전자문서 또는”으로 한다.

안 제30조 중 “숫자”를 “숫자,”로 한다.

안 제36조의 제목 “(발언시간의 제한)”을 “(발언 원칙)”으로 한다.

안 제37조제1항 중 “1시간을 초과”를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로 한다.

안 제46조제1항제4호 중 “출석의원과 청가의원”을 “출석의원”으로 한다.

안 제4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84조제4항”을 “제1항”으로 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안 제54조제1항 본문 중 “취지설명”을 “취지 설명”으로 한다.

안 제5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안 제61조제2항 중 “소관”을 “소속”으로 한다.

안 제62조제1항제3호 중 “출석위원과 청가위원의 성명과 수”를 “출석위원의 성명과 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무원 또는”을 “공무원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시장·교육감·위원회가 <u>제출·제안</u>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u>전자문서와 서면</u>으로 한다.</p>	<p>제18조(의안의 발의·제출) ① ----- ----- ----- ----- 제출한다.</p> <p>④ ----- ----- 의안 <u>처리시스템(이하 “의안시스템”이라 한다), 전자문서 또는</u> ----- ----- -.</p>	<p>제18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 ----- ----- ----- 제출한다.</p> <p>④ ----- ----- 전자 <u>문서 또는</u> ----- -----.</p> <p>제18조의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① <삭제></p>
<p>제18조의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① 의장은 주민조례발안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u>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결정을 하거나</u> 같은 법 제12조제1항</p>		<p>제18조의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① <삭제></p>

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
우에는 미리 「서
울특별시의회 주민
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이하 “주민
발안 조례”라 한다)
에 따른 주민조례
청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

② 제1항의 심의를
거친 후 의장 명의
로 발의된 주민청
구조례안의 심사절
차는 제19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
한 사항 이외에 주
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은 주민발안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상임위원회

제19조(상임위원회

② 의장 -----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상임위원회

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 내용·전문(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25조(의안·동의의

(현행과 같음)

② -----
5일 -----

-----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의안·동의의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 내용·전문(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
5일 -----

----- . <단서 삭제>

제25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할 경우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이 제출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철회) ① -----

때에는 발의자 전원이-----
- 때에는 동의한 의원이 -----
한다. 다만,-----

-----.

② 시장 또는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5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을 철회할 때

철회)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5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을 위원장이

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의안이 본회의 의제가 되기 전에 위원회에서 회송을 요청하고, 그 의안에 관한 변경동의가 해당 위원회에서 발의된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한 의안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철회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안이 본회의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제안한 의안이 본회의 의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 의안에 관한 변경동의가 해당 위원회에서 발의되어 해당 위원장이 이미 제출한 의안의 회송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한 의안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26조(변안) ① 본회의에 있어서의 변경동의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시장 또는 위원

제26조(변안) ① 본회의에서-----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 의원 --

제26조(변안) ① 본회의에서----- 발의할 때의 발의의원 및 찬성 의원 --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을 후에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6조 (발언 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 ③ (생략)

<신설>

-----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

-----.

제36조 (발언 시간의 제한) -----

-- 없다. 다만,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은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발언의원 수와 발언 순서를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

-----.

제36조 (발언 원칙)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p>제46조(회의록) ① 의 회는 회의록을 작 성하고 다음 사항 을 기재한다.</p> <p>1. ~ 3. (생 략)</p> <p>4. <u>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u></p> <p>5. ~ 14. (생 략)</p> <p>② (생 략)</p>	<p>제46조(회의록) ① -- ----- ----- -----.</p> <p>1. ~ 3. (현행과 같 음)</p> <p>4. <u>출석의원과 청가 의원</u>-----</p> <p>5. ~ 1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6조(회의록) (개정 안과 같음)</p> <p>1. ~ 3. (개정안과 같음)</p> <p>4. <u>출석의원</u>----- ---</p>
<p>제49조(회의록의 배 <u>부 및 공개</u>) ① ~ ③ (생 략)</p>	<p>제49조(회의록의 공 <u>개</u>) ① ~ ③ (현행 과 같음)</p>	<p>제49조(회의록의 공 <u>개</u>) ① ----- ----- ----- -----.</p> <p><u>다만, 비밀 로 할 필요가 있다 고 의장이 인정하 거나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 개하지 아니한다.</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토론은 질의 종결 후에 하며 토론의 방법은 제27조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축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조심사를 할 수 있다.

② 토론은 질의 종결 후에 하며, 토론의 방법은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본회의”는 “위원회”로, “의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③ -----

----- 시장 또는 교육감-----.

④ -----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축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조심사를 할 수 있다.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회 상정일 3일 전까지 소속위원회에게 배부하고, 시의회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위원회는 제정 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⑥ 제5항의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의 발의의원이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제5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 소속 위원에게 -----
--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

⑤ -----

----- 위원회의의결-----

-----.

⑥ ----- 전부개정조례안의 발의의원 -----

-----.

⑤ (개정안과 같음)

⑥ (개정안과 같음)

제58조(연석회의) ①
· ② (생략)

③ 연석회의는 안
건의 소관 위원회
의 회의로 한다.

<신설>

제58조(연석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연석회의는 안
건의 소관 위원회
회의로 하고,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주재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2
조와 43조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연석회의의 의
사정족수는 관련
위원회의 출석위원
수에 상관없이 소
관 위원회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의 출석으로 개의
한다. 그러나 관련
위원회의 위원이 1
명도 출석하지 않
은 경우는 유회된

제58조(연석회의) ①
· ② (개정안과 같
음)

③ 연석회의는 안
건의 소관 위원회
의 회의로 한다.

④ <삭제>

<신 설>

<신 설>

것으로 본다.

⑤ 연석회의의 회의차수는 소관 위원회의 회의차수에
만 산입한다.

⑥ 연석회의에서는
심사대상 안건에
관한 질의와 의견
교환만 할 수 있으
며, 토론과 표결은
할 수 없다. 다만,
연석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 안에
서의 결정은 할 수
있으며, 소관 위원
회의 의사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 참
고인의 의견청취와
필요한 경우 소위
원회를 설치하거나
비공개회의를 할
수 있다.

⑤ <삭 제>

⑥ <삭 제>

제61조(위원장의 보
고) ① (생략)

제61조(위원장의 보
고) ① (현행과 같
음)

제61조(위원장의 보
고)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62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2. (생략)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위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

6. ~ 10. (생략)

② ----- 소관 위원회의 다른 -----

-----.

③ ----- 제1항에 따라 보고할 때에 는 -----
- 덧붙일 -----.

제62조(위원회 회의록) ① -----

-----.

1.·2. (현행과 같음)

3. 출석위원과 청가 위원의 성명과 수

4. 위원이 아닌 출 석위원의 성명과 수

5. 출석한 공무원 또는 진술인의 성 명

6. ~ 10. (현행과

② ----- 소속 위 원회의 다른 -----

-----.

③ (개정안과 같음)

제62조(위원회 회의록) ① -----

-----.

1.·2. (개정안과 같음)

3. 출석위원의 성 명과 수

4. (개정안과 같음)

5. 출석한 공무원 과 진술인의 성 명

6. ~ 10. (개정안과

<p>11. 그 밖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p> <p>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한다.</p>	<p>같음)</p> <p>11. 그 밖에 위원회 - ----- ----- -----</p> <p>② 위원회에서 한 - ----- ----- ----- 기록 한다. 다만, ----- ----- ----- ----- ----- 있으며, 이 경우 ----- ----- 발언 취지를 ----- ----- -----.</p> <p>③ ----- ----- ----- 대리한 부위 원장이 서명한다.</p>	<p>같음)</p> <p>11.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	--	---

서울특별시의회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로 한다.

제11조 전단 중 “본회의는 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 “개의시를”을 “개의 시각을”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회의”를 “본회의”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산한다”를 “계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의”를 “본회의”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회의에 관한 선포)”를 “(본회의에 관한 선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을 “시각부터 1시간이 지날”로, “미달될 경우에는”을 “미치지 못할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의 중”을 “본회의 중”으로, “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장은 회의”를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로 한다.

제14조의2를 제14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4조의2) 제1항 단서 중 “의장 또는”을 “의장이나”로, “1/5인”을 “5분의 1”로, “찬성하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를 “찬성하거나, 의장이 각”으로 하며,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산회)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본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써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1항 중 “개의시간”을 “개의 시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을 “본회의의 개의 일시만을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7조의 제목“(의사일정의 미료안건)”을“(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회의를 열지”를 “본회의를 열지”로, “회의를 마치지”를 “마치지”로 한다.

제18조의 제목“(의안의 제출·발의)”를“(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출·제안한다.”를 “제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으로, “발의의원의”를 “발의 의원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발의의원이”를 “발의 의원이”로, “대표발의의원”을 “대표발의 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5일전까지”를 “15일 전까지”로,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자문서와”를 “전자문서 또는”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심의를 거친 후 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제출된 경우에는”을 “제출되었을 때에는”으로, “전송하고 인쇄하여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를 “전송하거나 인쇄·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중에는 본회의”를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의회홈페이지”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조례안 예고)”를 “(입법예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을 “5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의2제3항 전단 중 “관해 동”을 “대하여 이”로, “사항에 대해서는”을 “사항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3호 중 “교섭단체대표의원”을 각각 “대표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간내에”를 “기간 내에”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전단 중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을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속처리안건지정

동의”를 각각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을 “제3항”으로, “아니한”을 “아니하였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교섭단체대표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위원회의 제안)”을 “(위원회의 제출 의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의한”을 “제출한”으로 한다.

제23조 중 “동의자외”를 “동의자 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의원 13명 이상의 찬성자가”를 “13명 이상의 찬성 의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그 위원회”를 “그 대안을 그 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경우에는 발의자 전원”을 “때에는 발의자 전원이”로, “경우에는 동의한 자가”를 “때에는 동의한 의원이”로,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을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으로, “받아야”를 “얻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5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을 위원장이 철회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안이 본회의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제안한 의안이 본회의 의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 의안에 관한 번안동의가 해당 위원회에서 발의되어 해당 위원장이 이미 제출한 의안의 회송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한 의안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26조제1항 중 “본회의에 있어서의”를 “본회의에서”로, “발의한 의원의”를 “발의할 때의 발의 의원 및 찬성 의원”으로, “시장”을 “시장·교육감”으로, “갖추어”를 “갖추어 전자문서 또는”으로, “의결한다.그러나”를 “의결한다. 다만,”으로, “시장”을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을 “위원회에서 번안동의는 위원회”로, “갖추어”를 “갖추어 전자문서 또는”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를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서”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질의토론”을 “질의·토론”으로, “안건에 대하여는”을 “안건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인쇄하여 배부할 수 있다.”를 “제공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인쇄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28조 중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의의제에 대하여 수개”를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최후로”를 “가장 늦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수개가”를 “여러 건이”로 한다.

제30조 중 “의결이 있는 후에 서로 저촉되는”을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으로, “숫자”를 “숫자,”로,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을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 제4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

지한”을 “발언 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를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발언은 발언요지”를 “발언을 하려면 발언요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4항) 중 “발언통지”를 “발언 통지”로 한다.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의원의 발언은 발언하는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
- ② 의원이 산회 또는 본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 다시 그 의사가 시작되면 의장은 그 의원에게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4조의 제목 “(의제외 발언의 금지)”를 “(의제 외 발언의 금지)”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발언회수의 제한)”을 “(발언 횟수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회에 한하여”를 “2회를 초과하여”로, “있다.다만,”을 “없다. 다만,”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발언시간의 제한)”을 “(발언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없다.다만,”을 “없다. 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의장은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발언의원 수와 발언 순서를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의원 수와 발언 순서는 의

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7조의 제목 “(5분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을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으로, ““5분자유발언””을 ““5분자유발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5분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1시간”을 “4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교섭단체별 소속의원수”를 “의장은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수”로, “의장이”를 “5분 자유발언의 발언의원 수와 발언 순서를”로 한다.

제37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경우에도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7조제4항 전단 중 “5분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한다.

제37조의2 중 “소수의견자가”를 “소수 의견을 가진 의원이”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의장의 토론참가)”를 “(의장의 토론 참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하며”를 “하며,”로, “의장석에 들어갈”을 “의장석으로 돌아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해”를 “따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있은후”을 “있은 후”으로, “있다.다만,”을 “있다. 다만,”으로 한다.

제41조 중 “없다.그러나”를 “없다. 다만,”으로 한다.

제42조 중 “표결에 있어서”를 “표결에서”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본문 중 “안건에 대한”을 “의사진행에 관한 결정 등 간단하고 경미한 안건에 대해”로 하고, 같은 항 본문의 후단을 삭제한다.

제44조의 제목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를 “(투표용지를 이용한 투표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투표할 경우에는”을 “투표용지를 이용한 투표를 실시할 때에는”으로, “투입한다”를 “넣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투표할 경우에는”을 “투표용지를 이용한 투표를 실시할 때에는”으로, “몇몇”을 “몇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 모두”를 “의원 모두”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표결결과선포)”를 “(표결 결과 선포)”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매회기”를 “매 회기”로, “서명한다.다만,”을 “서명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있다.그러나”를 “있다. 다만,”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이나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의록에 적는다.

제49조의 제목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를 “(회의록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회의”를 “본회의”로, “아니된다.다만,”을 “아니된다.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일반에게”를 “일반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9조2제3항 중 “본회의 및”을 “본회의나”로 한다.

제49조3제1항 전단 중 “제49조의2 제1항에 규정된”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중 “(본회의중 위원회의 개회)”를 “(본회의 중 위원회의 개회)”로 한다.

제52조 중 “동의자외”를 “동의자 외”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위원회의 제안)”을 “(위원회의 의안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자”를 “제안자”로 한다.

제54조제1항 본문 중 “취지설명”을 “취지 설명”으로,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표결한다”를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하며, 제안자의 취지 설명은 제안자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서면으로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종결후에 하며”를 “종결 후에 하며,”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본회의”는 “위원회”로, “의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제54조제3항 중 “시장”을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속위원에게 배부하고, 시의회홈페이지”를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고,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위원

회의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발의의원”을 “발의 의원”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회수”를 “횡수”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안건 또는”를 “안건이나”로 한다.

제60조제2항 중 “제1항의 보고서에는 위원”을 “위원”으로, “경우에는”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로,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있다.다만,”을 “있다. 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경우에는이”를 “경우에는 이”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다른”을 “소속 위원회의 다른”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을 “제1항에 따라 보고할 때에는”으로, “가할”을 “덧붙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3호 중 “성명”을 “성명과 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공무원·진술인”을 “공무원과 진술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밖의 위원회의 의결”을 “밖에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에서의”를 “위원회에서 한”으로, “기록한다.다만,”을 “기록한다. 다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있다.이 경우에는”을 “있으며, 이 경우”로, “발언취지”를 “발언 취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리한부위원장이서명한다”를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한다”로 한다.

4. 위원이 아닌 출석의원의 성명과 수

제63조의 제목 “(비공개 회의록등의 열람과 대출금지)”를 “(비공개 회

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한다.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소관별 상임위원회에”를 “소관 상임위원회에”로, “소관별 상임위원회는”을 “소관 상임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하“예결위원회””를 “이하 “예결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관별 상임위원회에”를 “소관 상임위원회에”로, “소관별 상임위원회가”를 “소관 상임위원회가”로, “기간내에”를 “기간 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며,소관”을 “하며, 소관”으로 한다.

제68조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소관별 상임위원회에”를 “소관 상임위원회에”로, “소관별 상임위원회는”을 “소관 상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본문 중 “한다)제14조제1항”을 “한다)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보고한다”를 “보고하고,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그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60조제1항제7호”를 “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60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86조 중 “아니한다.다만,”을 “아니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관계의원”를 “관계 의원”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없다.다만,”을 “없다. 다만,”으로 한다.

제94조의 제목 “(규정등 제정)”을 “(규정 등 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 ----- --.</p>
<p>제11조(개회) 본회의는 의회의 의결 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그 개회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p>	<p>제11조(개회) 서울특별시의회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회장----- ----- 개회 시각을 --. ----- -----.</p>
<p>제12조(휴회) ① (생략) ② 휴회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재개한다.</p>	<p>제12조(휴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 본회의-----.</p>
<p>제13조(회기) ① (생략) ②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p>	<p>제13조(회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계산한다. ③ 본회의-----</p>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략)

②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개의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④ (생략)

<신 설>

-----.

제14조(본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각부터 1시간이 지날 -----

미치지 못할 때에는 -----
-----.

③ 본회의 중 -----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산회)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본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써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2(회의의 공개) ①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 또는 위원장의 제의 또는 재적의원 1/5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5조(의사일정) ① 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과 본회의 개의시간 및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② (생략)

③ 의장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

제14조의3(회의의 공개) ① -----
-----.
--- 의장이나 -----
----- 5분의 1 -----

----- 찬성하거나, 의장이
각 -----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의사일정) ① -----

----- 개의 시
각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본회의의 개의 일시만
을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

④ -----

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송부한다.

제17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 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 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시장·교육감·위원회가 제출·제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 지체 없이

-----.

제17조(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 본회의를 열지 -----
마치지 -----
-----.

제18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

----- 제출한다.

② -----
-----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
----- 발의 의원
의 -----
----- 발의 의원이 -----
----- 대표발의 의원 -----
-----.

③ -----
----- 15일 전까지 -----
한다. 다만, -----
-----.

④ -----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한다.

⑤ (생략)

제18조의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① 의장은 주민조례발안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이하 “주민발안조례”라 한다)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를 거친 후 의장 명의로 발의된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는 제19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은 주민발안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의원에게 전자문서로 전송하고 인쇄하여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

전자문서 또는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① <삭제>

② 의장 -----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
----- 제출되었을 때에는 -----
-- 전송하거나 인쇄·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

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21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2. (생략)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1조의2(안건의 신속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 -----
----.

제21조(심사기간) ① -----

-----.

----- 대표의원 -----

-----.

1. 2. (현행과 같음)
3. ----- 대표의원 -----

② -----
----- 기간 내에 -----

-----.

제21조의2(안건의 신속처리) ---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
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가 가결된 때에는 해당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전단에 따라 지정된 안건(이하 “신속처리대상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대안(代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

②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

③ (생략)

④ 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⑤·⑥ (생략)

⑦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위원회의 제안) 위원회에서 제의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3조(동의를 의제 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4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수정동의안과 그 이유를 붙여 의원 13명 이상의 찬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3항 -----

----- 아니하였을 -----

⑤·⑥ (현행과 같음)

⑦ ----- 대표의원 -----

제22조(위원회의 제출 의안) -----
-- 제출한 -----

제23조(동의를 의제 성립)-----

----- 동의자 외 --

제24조(수정동의) -----

----- 13명 이상의 찬

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5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할 경우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이 제출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성 의원이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그
대안을 그 위원회-----.

제25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 때
에는 발의자 전원이-----
--- 때에는 동의한 의원이 ---
-----한다. 다만,-----

-----.

② 시장 또는 교육감-----

----- 때에
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가 된 후에는 --- 언어야 ---.

③ 제5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을 위원장이 철회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안이 본회의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

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제안한 의안이 본회의 의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 의안에 관한 번안 동의를 해당 위원회에서 발의되어 해당 위원장이 이미 제출한 의안의 회송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한 의안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26조(번안) ① 본회의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를 의안을 발의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각각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그러나 의안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② 위원회에 있어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그러나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6조(번안) ① 본회의에서----- 발의할 때의 발의 의원 및 찬성 의원 -----
----- 시장·교육감 -----
----- 갖추어 전자문서 또는 -----
----- 의결한다. 다만, ----- 시장 또는 교육감 -----
-----.

② 위원회에서 번안동의는 위원회 ----- 갖추어 전자문서 또는 -----
-----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
-----.

제27조(안전심의) ① 본회의에서 안전을 심의할 경우에는 그 안전을 심사한 위원장 또는 의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전은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전에 대하여는 사전에 질의·토론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질의·토론을 생략한다.

② ~ ④ (생략)

⑤ 본회의의 안전 심의자료는 전자회의 단말기를 통하여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인쇄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8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결로 그 안전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9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의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

제27조(안전심의) ① -----

----- 질의·토론 -----

----- 안 -----
건은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제공 -----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인쇄하
여 배부할 수 있다.

제28조(재회부) -----

----- 때에는 -----

-----.

제29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같
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

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생략)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생략)

제30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는 후에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발언의 허가) ① (생략)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

-----.

1. 가장 늦게 -----
-----.

2. (현행과 같음)

3. ----- 여러 건이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의안의 정리) -----
---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
----- 숫자, -----
--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
-----.

제31조(발언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③ 발언 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를 한 -----

-----.

④ ----- 발언을 하려
면 발언 요지-----

장이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발언통지는 전
자회의 단말기 또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33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
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
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의
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신 설>

제34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생략)

제35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
여 발언할 수 있다.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
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발언 통지-----

-----.

제33조(발언의 계속) ① 의원의
발언은 발언하는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산회 또는 본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
우에 다시 그 의사가 시작되면
의장은 그 의원에게 먼저 발언
을 계속하게 한다.

제34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제35조(발언 횟수의 제한) -----
----- 2회를 초과하
여 ----- 없다. 다만, -----

-----.

제38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경우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의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들어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9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생략)

② 의장은 발언을 희망하는 의원의 발언이 끝나기 전이라도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결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생략)

제41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경우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경우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2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제38조(의장의 토론 참가) -----
----- 때에는 -----
----- 하며, -----
----- 의장
석으로 돌아갈 ----.

② ----- 따라 -----

-----.

제39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있은 후

----- 있다. 다만, -----

-----.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표결의 참가) -----

----- 없다. 다
만, -----

-----.

제42조(의사변경의 금지) -----
표결에서 -----

변경할 수 없다.

제43조(표결방법) ①·② (생략)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44조(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① 투표할 경우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경우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몇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감표위원의 참여하에 사무처 직원에게 투개표 상황을 점검·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

제43조(표결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의사진행에 관한 결정 등 간단하고 경미한 안건에 대해 -----
----- <후단 삭제> -----
-----.

제44조(투표용지를 이용한 투표절차) ① 투표용지를 이용한 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

넣는다.

② 투표용지를 이용한 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
----- 몇 명 -----
-----.

③ -----
----- 한다.
다만, -----

아니하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위원 모두
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5조(표결결과선포) 표결이 끝
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제47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
한 부의장·임시의장과 의회에
서 매회기마다 선출된 2명 이상
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
한다.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

② (생략)

제48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
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임시회의록이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날
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 정정
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그
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생략)

<신설>

-----.

④ ----- 의원 모두 --
-----.

제45조(표결 결과 선포) -----

-----.

제47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 매 회기 -----
----- 서명
한다. 다만, -----
-----.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
정) ① -----

----- 있다. 다
만, -----
-----.

② (현행과 같음)

③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삭
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이나 취소의 발언을

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실시범위·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의3(영상자료의 제공) ① 의장은 제4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회의 중계 영상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편집 및 제공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② (생략)

제51조(본회의중 위원회의 개최) (생략)

제52조(위원회에서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3조(위원회의 제안) ① (생략)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4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경우에는 먼

-----.

제49조의3(영상자료의 제공) ① -
----- 제49조의2제1항에 따
른 -----

-----.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본회의 중 위원회의 개최) (현행과 같음)

제52조(위원회에서 동의) -----
----- 동의자 외 -----
-----.

제53조(위원회의 의안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안자-----.

제54조(위원회의 심사) -----

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로 축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조심사를 할 수 있다.

② 토론은 질의 종결후에 하며 토론의 방법은 제27조를 준용한다. <후단 신설>

③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3일 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하고, 시의회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

----- 취지 설명과 -----
-----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하며, 제안자의 취지 설명은 제안자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인정하는 -----
-----.

② 토론은 질의 종결 후에 하며, 토론의 방법은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본회의”는 “위원회”로, “의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③ -----

----- 시장 또는 교육감 -----
-----.

④ -----

-----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고,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
-----.

⑤ -----

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⑥ 제5항의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의 발의의원이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제5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제55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59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60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 위원회의 의결 -----

⑥ ----- 발의의원 -----

제55조(위원의 발언) ① ----- 회수 -----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공청회) ① ----- 안건이나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생략)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전자문서를 통하여 제공하고, 인쇄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1조(위원장의 보고)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62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2. (생략)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현행과 같음)

② 위원-----
-----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
----- 적어야 -----.

③ -----

----- 있다. 다만, ----- 경우에는 이를 -----.

제61조(위원장의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소속 위원회의 다른 -----
-----.

③ ----- 제1항에 따라 보고할 때에는 ----- 덧붙일 -----.

제62조(위원회 회의록)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 성명과 수

4. 위원이 아닌 출석위원의 성명과 수

5. 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성명

6. ~ 10. (생략)

11. 그 밖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부위원장이 서명한다.

제63조(비공개 회의록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위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과 그 밖의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5. ----- 공무원과 진술인-----
--

6. ~ 10. (현행과 같음)

11. -- 밖에 위원회 -----

② 위원회에서 한 -----

----- 기록한다. 다만, -----

----- 있으며, 이 -----
경우 -----
발언 취지를 -----
-----.

③ -----
----- 대리한 부위원장 -----
이 서명한다.

제63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

----- 한다. 다만, -----
-----.

제65조(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소관별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소관별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결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④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5조(예산안 심의) ① -----

-- 소관 상임위원회에 -----

----- 소관
상임위원회는 -----

--.

② -----

--(이하 “예결위원회”-----)--

-----.

③ ----- 소관
상임위원회에 -----

-- 소관 상임위원회가 -----
----- 기간 내에 -----

-----.

④ -----

-- 하며, 소관 -----

-----.

제68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
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재심사
를 요구할 수 있다.

제69조(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별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생략)

제84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
례」(이하 “윤리강령 조례”라
한다)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원(이하 “윤리심사대상자”라
한다)또는 법 제98조에 해당하
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
상자”라 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
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윤리강
령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통
고를 2회 받은 의원은 징계대상
자가 된다.

제68조(예산안의 재심요구) ----

한정하여 -----
-----.

제69조(결산의 심사) ① -----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회는-----
-----.

② (현행과 같음)

제84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

한다) 제14조제1항-----

-----.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보고한다.이 경우에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60조제1항제7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86조(의사의 비공개)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7조(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거쳐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피심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② -----

보고하고,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그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후단 삭제>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
----- 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60조제1항제7호-----

-----.

제86조(의사의 비공개) -----

- 아니한다. 다만, -----

-----.

제87조(심문 및 변명) ① -----

----- 관계 의원-----
-----.

② -----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
다만,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
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
다.

제94조(규정 등 제정) (생략)

----- 없다.
다만, -----

--.

제94조(규정 등 제정) (현행과 같
음)